

의 정 정 보

2005 - 24 12. 28

목 차

I. 중앙기관 정보	1
II. 입법 예고된 법령	10
부 록 : 행복한 책 읽기	11

I. 중앙기관 정보

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재산등록 범위에 새롭게 추가시키는 등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반면, 정기신고방식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공직자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이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직윤리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는
 - 일정한 경제적 가치가 잠재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과 관련된 이해충돌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재산등록 범위에 이를 새롭게 추가하였고
 - 재산형성과정 심사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신고한 등록의무자 등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발견된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법무부 등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에 대한 통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윤리위원회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에 연차보고서를 매년 제출토록 제도화하였다.
 - 한편,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영리

사기업체 및 협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였고,
자료제출 요구 및 취업해제 요구에 불응한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다.

- 다음으로 재산등록 의무자의 신고부담 완화로 직무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정기변동신고 방식을 등록의무자가 간편
하게 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하였다.
- 현행제도상 정기변동신고는 공직자('04년말 기준 : 138천명 정도)가
연초 업무상 바쁜 시기인 1월중에 일일이 금융기관 등 신고
자료 보유기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확보해서 신고를 하고
관련자료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됨에 따라 신고부담이 과중
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정부가 현재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전산화를 위해 구축중인 공직
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
부동산 신고 기초자료를 보유기관으로부터 일괄 확보하여 공직자
에게 제공하고, 공직자는 이를 확인하여 신고만 하면 되고, 종전
의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정기변동 신고시기가 1월중이라 연초 업무계획 수립시기와
중복되어 재산신고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기한을
2월말까지로 연장하였으며
- 또한 전보 등으로 의무가 면제된 자(예 :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이 감사
부서에서 근무하다 타부서로 전보된 경우)의 경우 총 3회에 걸쳐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횟수를 총 2회로
축소하였다.

② 고위공무원단제도 2006년 7월 부터 시행

- 2006년 7월부터 1~3급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해 직무중심으로 인사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 국회는 '05.12.8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인사혁신의 핵심과제이자 공직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고위공무원단이 2006년 7월 1일 자로 정식 출범하게 된다.
-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신분적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의 근본 틀을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대폭 개편하는 선진제도로,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공직사회에 개방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정기국회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7월 1일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의 계급(1~3급)구분이 폐지되고, 각 부처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처 소속에 상관없이 해당 직위의 적임자를 뽑아 임용제청할 수 있게 된다.
- 고위공무원단 편입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일반직·별정직·계약직)이지만 외무직과 같은 일부 특정직과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도 포함된다.

<고위공무원단 대상자 현황 ('05. 5월 기준)>

고 위 공무원단 (1,582)	정규직위 재직자 (1,253)				파 견 (251)		지 방 (78)	
	일 반 (690)	별 정 (173)	계 약 (46)	외무 (344)	직 무 (170)	교 육 (81)	지자체 (59)	교육청 (19)

※ 대상 직위수는 일부 변동 가능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계급대신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반영한 직무등급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민간과 경쟁을 하는 개방형직위뿐 아니라 부처간 경쟁을 하는 공모직위제도도 시행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현행 1~3급 승진·채용 때마다 실시하는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심사를 고위공무원단 진입(신규 채용·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시에만 실시하여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중앙인사위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년 및 신분보장 제도는 현행대로 존치,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성과가 극히 부진하거나 능력이 현저히 미달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 적격심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지지만, 2년간 연속 또는 총 3년간 근무성적 최하위 평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무보직 기간이 2년에 이르면 수시 심사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다.

③ 중앙인사위, 5급이하 공무원 직군·직렬체계 대폭 손질

- 공무원들의 업무분야를 구분하는 기본단위인 직군·직렬 체계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크게 개편된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부처 인력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5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직무분류체계를 현행 10직군 57직렬에서 2직군 29직렬로 통합·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중앙인사위는 정부 부처간 협의와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07. 1. 1 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공직분류체계 개편 제1단계로 4급 이상 공무원의 직군·직렬을 통합해 기술직과 행정직의 구분을 없앴으며, 이번 제2단계 조치로 5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직군·직렬체계 개편에 나서게 된 것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공안·행정·광공업·농림수산·물리·보건의를·환경·교통·시설·정보통신 등 10개 직군은 행정, 기술 2개 직군으로 묶기로 했다.
- 이와함께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인원도 적은 소수직렬들을 통합해 현행 57개 직렬을 29개의 대(大)직렬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 예컨대 기존의 토목, 건축 직렬을 시설직렬로 통합해 토목사무관(5급)·토목주사(6급), 건축사무관·건축주사가 각각 시설사무관·시설주사로 직급 명칭이 바뀌게 된다.

- 이 경우 일선 부처들은 새로운 직렬에 따라 기존의 토목
사무관과 건축사무관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다 탄력적
으로 인사운영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아울러 전자(26명), 금속(42명), 자원(53명)직렬 등 직무가
유사한 소수인원 직렬은 공업직렬로 통합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행정직렬 등 다수인원 직렬에 비해 승진·보직
등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아온 소수인원 직렬의 문제점
과 불합리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앙인사위는 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직렬과 직류를 신설키로 했다.
- 해양자원의 전략적 활용 및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선, 수산, 선박 및 수로 직렬을 통합하여 해양수산직렬을
신설하였으며
- 최근 급증하는 생명공학기술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생명유전,
조경, 지진 등 5개 직류의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새로운 시험과목 설정을 위한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관련규정 개정과 각 부처의 준비 작업 등을 고려해
1년간의 경과조치를 두어 2007년 1월 1일부터 직군·직렬체계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참 고> : 세부개편 내용

<직렬 개편> : 전체 57직렬 ⇒ 29직렬

○ 행정직군 : 19직렬 ⇒ 15직렬

노동 + 문화 + 공보 + 운수	⇒	행 정
-------------------	---	-----

○ 기술직군 : 38직렬 ⇒ 14직렬

기계 + 금속 + 전기 + 전자 + 원자력 + 섬유 + 화공 + 자원 + 물리	⇒	공업
농업 + 식물검역 + 임업 + 축산		농림축산
보건 + 의료기술		보건
교통 + 항공		교통항공
도시계획 + 토목 + 건축 + 지적 + 측지		시설
통신사+통신기술+전송기술+전자통신기술		통신
조선 + 수산 + 선박 + 수로		해양수산

<직류 개편>

- 문화직류 + 공보직류 ⇒ 문화홍보직류
- 생명유전, 조경, 해양, 선박관제 및 지진직류 신설
- 일부 직류의 명칭 변경
 - 일반임업→산림자원, 가공이용→산림이용

<시행시기> : '07. 1. 1 부터 시행

- 직렬통합에 따른 각부처의 준비작업, 직류신설에 따른 시험과목 설정, 보수및수당규정 개정 등을 위한 시행유예기간 1년 설정

④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업무 개시

- 지난 '05.5.31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2005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된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정부 어느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장관급 위원장이 맡게되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출범하게 되며, 과거사 정리대상 업무중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을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 항일독립운동,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6.25 전쟁시기에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 등에 의한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및 조작 의혹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1년내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시·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 할 수 있다.
-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
이거나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 그리고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
하거나 단체로 신청 할 수 있다.

- 다만, 단체로 신청 할 경우에는 그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
하면 된다.

○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최장 6년간 활동하게 된다.

II. 입법 예고된 법령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 일부개정령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의 대체토지 취득요건을 당해 허가구역으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고, 취득허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거래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3월의 기간내에서 문서로써 이행명령 하도록 함
- 이행강제금의 중복부과를 막기 위하여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등은 부과 제외함
- 이행강제금은 이용의무 위반행위별로 부과율을 차등화(토지취득가액의 10/100~5/100)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써 경고하도록 함
-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이의제기방법 등을 정한 문서로써 통지하도록 함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

- 농업, 임·축·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현행 6월에서 → 1년이상 거주하도록 기간을 연장함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06. 1. 6 까지

제 출 처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토지정책팀

(전화 02-504-9121, 팩스 02-503-7397)